

채용우대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(*보훈특별고용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)

○ 채용우대 지원자격

구 분	지 원 자 격
취업지원 대상자 (가점)	◇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9조 ◇ 『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』 제16조 ◇ 『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32조 ◇ 『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』 제20조 ◇ 『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19조 ◇ 『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』 제7조의9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
○ 우대사항

구 분	가점비율	확인방법	비 고
취업지원 대상자	각 전형 만점의 5% 또는 10%	국가보훈부 발급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	- 각 전형별 만점의 40%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점 부여 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직무별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.(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)